

#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관

|    |       |     |    |
|----|-------|-----|----|
| 제정 | 1979. | 9.  | 15 |
| 개정 | 1979. | 12. | 20 |
|    | 1981. | 2.  | 28 |
|    | 1982. | 2.  | 19 |
|    | 1983. | 2.  | 18 |
|    | 1984. | 3.  | 5  |
|    | 1987. | 2.  | 12 |
|    | 1988. | 4.  | 7  |
|    | 1991. | 4.  | 24 |
|    | 1992. | 1.  | 1  |
|    | 1993. | 6.  | 1  |
|    | 1994. | 3.  | 5  |
|    | 1995. | 12. | 20 |
|    | 1997. | 6.  | 16 |
|    | 2000. | 4.  | 19 |
|    | 2002. | 2.  | 22 |
|    | 2006. | 5.  | 12 |
|    | 2014. | 3.  | 25 |
|    | 2018. | 11. | 12 |
|    | 2020. | 3.  | 10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약칭,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직장·공장(이하 “직장”이라 한다)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선도함으로써 직장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각 시·도 및 시·군·구 소재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3. 10)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직장새마을운동 장·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2. 직장새마을운동 확산·파급 및 그 지도
3. 직장새마을교육과 홍보
4. 직장새마을운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발간
5. 직장새마을운동 실적평가 및 표창
6. 회원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업
7. 기타 직장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도 및 시·군·구협의회 설치)** 본회는 산하조직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군·구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본회 회원)** ①본회의 회원은 시·도협의회와 전국에 걸쳐 조직을 가진 각 직능별 대표단체·공공기관 및 기업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또는 탈퇴한다.(2002. 2. 22)

**제7조(시·도 및 시·군·구협의회 회원)** ①시·도협의회 회원은 시·군·구협의회와 그 소속 회원 등으로 한다.(개정 2014.3.25)

②시·군·구협의회 회원은 당해 시·군·구 관내에 소재하는 개인 사업자 및 단체 등으로 한다. 단, 시·군·구협의회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4.3.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각 당해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또는 탈퇴한다.(2002. 2. 22)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회원은 각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과 본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각 협의회에서 직장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회비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조(제명)** ①회원이 폐업·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③회원 협의회가 3년이상 휴면상태일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2002. 2. 22)

###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2020. 3. 10)
4. 이사 20인이내(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②제1항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3.25)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총무는 회원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회장,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0. 3. 10)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회 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급협의회 회장으로 재임중인 자가 상급 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2002. 2. 22)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3.25)

④회장외의 임원이 그 임기중 회원단체 등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임자가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⑤부회장, 감사는 본회 회원중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본회 회장, 부회장 및 시·도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선임직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사임 및 수리)** ①본회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임서는 접수와 동시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고문)** ①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직장새마을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중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고문은 직장새마을운동의 중요사항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 ①본회에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직장새마을운동에 관한 각종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자문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행한다.

④자문위원회는 필요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후원회)** ①본회에 직장새마을운동의 발전과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원은 직장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도, 재정후원능력, 사회적 지명도 및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 발언권 등)**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고문, 자문위원, 후원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 임원 및 시·도협의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그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④회장은 총회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결산 및 감사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회원의 제명
6. 협의회의 해산
7. 기타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제22조(개의회와 의결)**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제명 및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3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당해 총회에서 지정한 회원 3인이 서명날인하고 사무처장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6조(개의회와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7조(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원가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협회회의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 사무집행상 중요한 사항

②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당해 이사회에서 지정한 이사 2인이 서명날인하고 사무처장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 제6장 사 무 처

**제28조(설치)** 본회 사무소의 업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개정 2014.3.25)

**제29조(직원)** 삭제 (개정 2014.3.25)

## 제7장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

**제30조(사업)** ①시·도협의회는 본회의 사업과 자체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행한다.

②시·군·구협의회는 본회와 시·도협의회와의 사업 및 기타 자체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행한다.

**제31조(임원)** ①시·도 및 시·군·구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2020. 3. 10)
4. 운영위원 20인이내
5. 감사 2인

②제1항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③시·도협의회장은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고 시·군·구협의회장은 시·도협의회장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14.3.25)

**제32조(시·도 및 시·군·구협의회 사무국)**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의 사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시·도 및 시·군·구 사무국에서 담당한다.(개정 2014.3.25)

**제33조(보고)** 시·군·구협의회는 매월 사업실적 및 익월 사업계획을 매월 25일까지 관할 시·도협의회에 보고하고 시·도협의회는 매월 말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3.25)

## 제 8 장 재 정

**제34조(재원)** 본회의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회원의 회비, 임원의 출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4.3.25)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3.25)

②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3.25)

**제37조(지도와 감독)** 본회는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에 대하여, 시·도협의회는 관할 시·군·구협의회에 대하여 각각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등 당해 협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 9 장 보 칙

**제3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3.25)

**제39조(정관의 개정 등)** 본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정의 제정)** ①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본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규정으로서 중앙회와 특히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1조(준용)** 이 정관중 제8조 내지 제10조, 12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8조는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제21조 및 제22조중 “정관”은 “회칙”으로,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4조 내지 제27조중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제38조의 “주무부장관”은 시·도협의회에서는 “본회 회장”으로 시·군·구협의회에서는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각각 보며 제36조 제1항의 “제출”은 시·도, 시·군·구협의회에서는 “승인”으로 한다.(개정 2014.3.25)

## 부 칙

- ①(경과조치) 본 협의회 설립이전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 및 시협의회는 본 정관에 맞추어 개편한다.
- ②(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본회 임원의 임기는 1979. 12. 31일까지로 한다.
- ③(법령준용) 이 정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 ④(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79. 9. 15)

## 부 칙

- ①(경과조치) 본 협의회 설립이전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 및 시협의회는 본 정관에 맞추어 개편한다.
- ②(법령준용)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 ③(시행일) 이 정관에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79. 12. 20)

## 부 칙

- ①(경과조치) 중앙협의회 회장은 직장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회장을 겸한다.
- ②(경과조치) 본 협의회 설립이전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 및 시협의회는 본 정관에 맞추어 개편한다.
- ③(법령준용) 이 정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 ④(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1. 2. 28)

## 부 칙

- ①(경과조치) 본 협의회 설립이전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 및 시협의회는 본 정관에 맞추어 개편한다.
- ②(법령준용)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 ③(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2. 2. 19)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 선임된 협의회 임기는 1985. 12.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198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개정된 정관의 임기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의 시행으로 초과된 부회장, 이사는 잔임기간 만료시까지 구정관의 정원에 의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8년 11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는 제13조 제2항 및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1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0년 3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